

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[별표 3] <개정 2025. 8. 21.>

임용권의 위임(제5조제1항 관련)

수임자	위임사항
상임위원	(1)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4급 공무원의 전입 임용 (2)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공무원의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(3) 법 제74조에 따른 4급 공무원의 정년퇴직
사무총장	(1) 복수직 3급 공무원의 전보, 겸임, 파견, 휴직 및 복직 (2) 4급·5급 공무원의 전보, 겸임, 파견, 강임, 휴직, 직위해제, 정직, 강등, 복직 및 면직(법 제70조에 따른 직권면직은 제외한다) (3)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5급 공무원의 전입 임용 (4)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공무원의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의 전출 (5) 법 제74조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정년퇴직